

#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0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2. 11.

제안자 : 김은영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한다는 사유로 기존 위원회 근거 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으나,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이 다르므로 기존 위원회를 존치코자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임의 규정으로 정함 (안 제8조 제2항)
- 나.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존치 (안 제9조 ~ 제14조)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대행한다”를 “대행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부터 제14조까지 “삭제”를 “현행과 같음”으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p>제5조(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제5조(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할 수 있다.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국장, 과장으로 한다.</u></p>	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③ <u>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</u></li> <li>2. <u>학계, 경제계,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</u></li> <li>3. <u>그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</u></li> </ol> <p><b>제10조(위원의 임기)</b>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11조(위원의 해촉)</b>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li> <li>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</u>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<b>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</b> 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</b> 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4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